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유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8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 강유정 · 진선미 · 김한규

김우영 • 문정복 • 이용우

박희승 • 양부남 • 박상혁

위성락 · 강경숙 · 전재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.

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,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.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,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 즉시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.

제13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33조(탄핵소추의 의결) (생 | 제133조(탄핵소추의 의결) ① (현 | | |
| 략) |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| | |
| <u> <신 설></u> | ②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 즉 | | |
| | 시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| | |
| |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| | |
| |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| | |
| |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. | | |
| 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| 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| | |
| 과) ① (생 략) | 과) ① (현행과 같음) | | |
|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| <u><삭 제></u> | | |
|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 | | | |
| 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 | | | |
| 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 | | | |
| 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| | | |
| <u>없다.</u> | | | |